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11차 회의

1. 일 자 2009년 4월 30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정 대 화 법규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9호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의 상한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자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시행령 개정일인 지난 4월 22일부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오늘 30일까지의 기간중 연체이자율 처리와 관련하여 당행과 금융위원회의 처리방법이 상이한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과 금융위원회의 관련규정 개정 시점의 차이 등 규정 개정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연체이자율 임계치 25% 기준이 삭제되었는데 정부가 동 임계치를 수정할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연체이자율 큰 폭 인하 관련 공청회 개최 등 사전논의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정책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규정 개정과정에서 당행과 금융위원회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관 금융기관 관련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를 각각 취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금통위 규정은 임계치 조항에 한하기 때문에 지난 4월 22일 시행령의 효력 발생으로 동 규정은 실효(失效)되었으며 입법공백 기간중의 기존계약은 유효하다는 당행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 법규실을 비롯하여 복수의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모두 당행의 입장과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 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5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